

# 「2024 오늘전통 청년 초기창업기업」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전통문화분야 초기 유망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20일

## I. 공모 개요

- **사업목적** : 전통문화 유망 청년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연계형 전문보육 지원을 통한 전통문화산업 초기창업기업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
- **공모명** : 2024 오늘전통 청년 초기창업기업 공모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공모기간** : 2024년 3월 20일(수)~4월 19일(금)
- **사업기간** : 7개월 (24년 6~12월 예정)
  - ※ 최대 3년간(2024~2026년) 지속 지원 가능. 단, 1년 지원 후 성과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속 지원 여부 결정
- **선정규모** : 총 10개사 이상
- **사업화 자금** : 기업당 평균 20백만원 지원
  - ※ 창업기획자(AC)를 통한 교육·멘토링 등 별도 지원

구분	선정기업 수	지원 자금
	10개사 이상	20백만원 *창업기획자(AC)의 기업평가에 따라 변동 가능
초기창업기업 (창업 3년 미만)	<b>* 3년간 지원되는 사업화 자금(최대) : 100백만원 (변경 가능)</b> 1년차('24) 20백만원 ▶ 2년차('25) 30백만원 ▶ 3년차('26) 50백만원 ※ (유의사항) ①창업기획자(AC)평가를 통해 기업당 사업화 자금의 차등 지급 가능. ②매년 사업평가에 따라 미흡기업(성과평가 60점 미만)은 2·3년차 연속지원 불가	

- **사업내용** :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지원 분야	① 제품개발 중점 지원	② 판로개척 중점 지원
지원기업 수	5개사 이상	5개사 이상
주요 지원 내용	제품 디자인, 제품 양산, 가격 책정 등 제품개발 중점 지원	유통채널 확대, 지재권 취득, 투자유치 등 판로개척 중점 지원

※ 분야별 공모 참여기업 수에 따라 각 분야 지원기업의 수 조정 가능

- ※ 심사위원 과반 이상의 판단에 따라 공모 참여기업의 지원 분야 조정 가능
- ※ 2~3차년도 연속지원 기업은 기업의 성장변화에 따라 지원분야가 조정될 수 있음(예: 제품개발 중점 지원 → 판로개척 중점 지원)

## II.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가. 신청 자격

- 최초공고일 기준(2024.3.20.) 전통문화산업\* 업력 3년 미만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만 39세 이하인 자

※ 기술창업의 경우, 만 49세 이하까지 사업 참여 가능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 자목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 최초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2021년 3월 20일 이후 창업한 기업)

#### ☞ 업력 확인 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참고1]의 창업 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결정

☞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법인기업 대표자의 경우 실질 경영주로 최대주주이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전업으로 지원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창업 사업화 진도율, 창업 교육 및 사업화 코칭 등의 프로그램 참여에 불성실할 경우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 아래'가~마'요건의 기술경력자는 만 49세 이하까지 사업에 참여 가능

※ 청년창업 지원 취지에 따라 총 참여기업의 30% 이내로 선정

가.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10년 이상 동종 분야 경력 소지자

나.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7년 이상 동종 분야 경력 소지자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동종 분야 경력 소지자

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동종 분야 경력 소지자

마. 동종분야 박사, 기술사, 기능장 및 이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나. 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제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고2] 참조

### ☞ 공고일 기준 틱스(TIPS) 프로그램에 선정된 자(기업)

### ☞ 최초 공고일('24.3.20)부터 협약 체결기간인 2024년 12월까지, 문체부 등 중앙부처, 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 기선정 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해당 사업의 협약 기간이 본 사업의 협약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이어도, 중앙부처·공공기관이 주최한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유사 사업 예시 [참고3] 참조

### ☞ 공고 마감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 ☞ 기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III. 지원 내용

### 가. 사업화 지원

#### 1) 사업화 자금 지원(정부지원금)

○ 지원액 : 평균 20백만원

- 사업화 자금은 창업기획자(AC) 기업평가에 따라 변동 가능
- 창업기획자(AC)를 통한 교육·멘토링 등은 사업화 자금과 별도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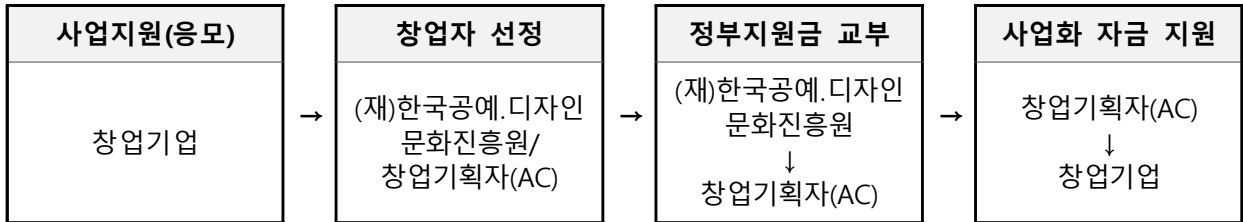
○ 사용용도 : 제품(서비스) 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 기술정보 활동비,

지재권 취득비, 홍보·마케팅비 등

※ 유형자산 취득 불가

※ 사후환급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정부지원금으로 사용 불가

○ 지원 체계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금) 구성

선정기업 수	기업당 사업화 자금
총 10개사 이상	평균 20백만원 (최소 10백만원 ~ 최대 30백만원)

※ 연도별 평균 사업화 자금 지원액

: 1년차('24) 20백만원 → 2년차('25) 30백만원 → 3년차('26) 50백만원

- 평가를 통해 연속지원여부 결정 / 기업당 사업화 자금 차등 지급

2) 초기창업기업 특화 지원

○ 사업화 지원 및 관리 : 창업 지원금 활용, 수익모델 개발 및 보완

- 제품개발 중점지원: 제품 디자인, 제품 양산, 가격 책정 등
- 판로개척 중점지원: 유통채널 확대, 지재권 취득, 투자유치 등

※ 기업별 지원 분야에 따라 차별화된 포인트와 강점을 보유할 수 있도록 특화 지원

- 교육·멘토링 : 기업의 특징, 요구사항,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 프로모션·홍보 지원 : 유통·투자상담회 등 프로모션 지원 및 국내외 매체, 협력기관 등 홍보채널 활용 홍보
- 투자유치 지원 : 국내외 투자자 대상으로 데모데이 개최 및 우수참여 기업 창업기획자(AC) 직접투자
- 시상 : 우수 초기창업기업 대상 시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진흥원 원장상 등)
- 사후 관리 : 후속 투자 유치, 상호협력 등 후속 지원

※ 기업 특화 지원은 해당 창업기획자(AC)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후속 지원

○ 참여기업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단, 매년 평가를 통해 미흡 (성과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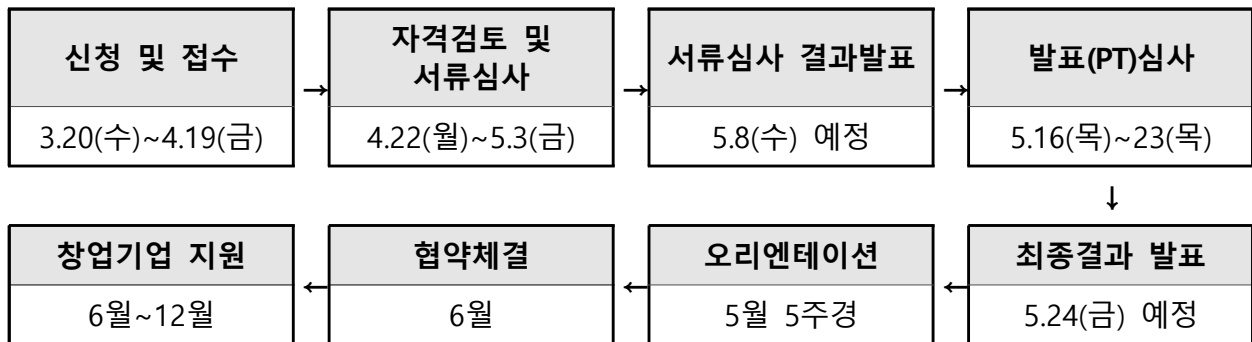
60점 미만) 기업 사업 중도 탈락

- 연도별 사업화 자금 지원액(예정) : 3년간 평균 총 100백만원  
(1년차 평균 20백만원 → 2년차 평균 30백만원 → 3년차 평균 50백만원)

※ 창업기획자(AC)의 평가를 통해 기업당 사업화 자금 차등 지급

#### IV. 신청 및 접수

- 공모기간 : 2024년 3월 20일(수)~4월 19일(금)
- 신청방법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업공모 홈페이지에서 신청
  - 사업공모 홈페이지 주소 : [www.kcdf.kr/businessapplication](http://www.kcdf.kr/businessapplication)
  - ※ 우편/방문 접수 불가, 접수된 자료와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제출 후 수정 불가)
- 세부일정(안)



※ 상기 일정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창업기획자(AC)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서류심사, 발표(PT)심사 및 합격자 발표, 오리엔테이션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www.kcdf.or.kr](http://www.kcdf.or.kr))에 공지 예정
- \* 세부 일정은 신청 및 접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붙임 1~3의 서식 활용

세부 내용	비고
· 오늘전통 청년 초기창업기업 공모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붙임 1
· 오늘전통 청년 초기창업기업 공모 신청 관련 증빙자료 - 기창업(창업 3년 미만) 증빙서류 1부 - 기술경력보유 증빙서류 1부 - 서류심사 가점 사항 증빙서류 1부	붙임 2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	붙임 3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누락 시 신청접수 등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임의 양식의 신청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가점 증빙서류 등 추가 제출서류는 붙임2에 포함하여 제출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제외

## V. 선정 및 지원 절차

### 가. 자격검토 및 서류심사

- 평가방법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신청서,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
- 평가항목 : 신청 자격의 검토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등 평가
  - ※ 서류심사 가점 사항 : 최대 3점 이내 부여([참고4] 참조)
  - ※ '2020년 전통문화분야 청년 예비 창업기업 공모' 우수 사업 수상자 가점 부여
  - ※ '2021~23년 전통문화 청년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가점 부여
  - ※ 발표(PT)심사 대상은 서류심사 60점 이상 평점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목표 1.5~3배수 내외에서 선정
  - ※ 평가 과정 후에도 신청 자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요건 미충족자는 탈락처리함

### 나. 발표(PT)심사

- 평가방법 : 신청자(대표자)의 창업 사업화 모델, 사업화 추진계획 등에 대한 발표평가(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항목 : 사업모델(BM)에 대한 기술성,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및 BM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계획 등
  - ※ 발표(PT)자는 신청자(대표자) 본인으로 하며, 심사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 최종 선정 예정 기업 중 발표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한하여 신청서 및 발표 자료 내용을 현장 확인함

### 다. 결과발표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사업화 지원금(정부지원금) 확정 후 결과 공지
- 최종 선정 후 선정 인원 20% 내외 예비합격자 선정
  - ※ 협약 포기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라. 협약체결

- 대상기업(최종선정자)은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과 협약체결

###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체결 불가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나. 협약 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다.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 라. 검토 결과 신청 제외 대상인 경우

###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 해약, 사업비 집행 중지, 회수 등 조치 가능

- 가.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기간 내에 정한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사업수행 포기
- 다. 부도·폐업·법정관리 등 사유로 계속적 사업 수행 불가능
- 라.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부터 사업중단 또는 지원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 마.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바. 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협약기간 중 사업이 불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법인의 경우 창업자(신청자)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포함)
- 사. 창업자(신청자)가 당초 신청 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

## VI. 유의사항

### 가. 신청 및 평가 유의사항

- 신청 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 및 신청 관련 증빙서류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자는 전체 선발평가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며, 불참 시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 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가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참여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창업기획자(AC)는 평가 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 창업자에게 귀속됨

## 나. 선정 후 유의사항

-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 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최종선정자는 신청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최종선정자는 협약 기간 내 창업 교육, 사업화 코칭, 네트워킹 참여 등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창업기획자(AC)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 사업의 정부지원금은 협약을 체결한 뒤 지급되며, 사업비는 '이나라 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사업의 정부지원금은 창업기획자(AC)의 평가에 따라 기업별 차등 지급으로 운영됨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요건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창업기획자(AC)는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초기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사업의 협약 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최종선정자는 협약 종료 연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 및 자료 제출(매출, 인력채용 현황 등)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VII. 사업문의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통문화산업기반팀**

- 전 화 : 02-398-1694
- 이메일 : jinny413@kcdf.kr

**【참고】**

1. 창업 여부 및 창업 업력 기준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3. 지원 제외 대상 유사 사업 예시
4. 서류심사 가점 사항

**【붙임】**

1. 오늘전통 청년 초기창업기업 공모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오늘전통 청년 초기창업기업 공모 신청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

**참고 1**

**창업 여부 및 창업 업력 기준(공고일 기준)**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이종	창업아님 창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 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의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영 시행(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참고2****지원 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http://kssc.kostat.go.kr)) 참고

**참고3**

**지원 제외 대상 유사 사업 예시**

연 번	사 업 명
1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TIPS창업사업화)
2	예비창업패키지
3	초기창업패키지
4	초격차 스타트업1000+프로젝트
5	아기유니콘200육성사업
6	재도전성공패키지
7	창업중심대학
8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
9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
10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1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12	K-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
13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설
14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DATA-Stars)
15	에코스타트업 지원
16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창업 대전
17	물드림 사업화 지원
18	예술기업 성장 지원
19	스포츠산업 창업 지원
20	스포츠산업 창업중기(액셀러레이팅)지원
21	콘텐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22	콘텐츠 초기창업 육성 지원
23	콘텐츠 창업도약 프로그램
24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콘텐츠 오픈이노베이션)
25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26	관광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27	신사업창업사관학교
28	농식품 벤처 육성지원
29	농식품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30	농식품 판로지원
31	유망 창업기업 투자유치 지원사업
32	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33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34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 위 사업 외 주관사가 판단하기에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 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사업

- 위 사업에 기 선정(협약 후 포기자 포함) 되어 본 사업 최초 공고일(2024.3.20) 부터 본 사업 협약종료일(2024.12.31)까지 기간 중 지원 기간이 하루라도 겹치는 자(기업)는 본 사업 참여 불가
- ※ 유사사업의 사업기간이 본사업의 협약기간과 겹치지 않을 시 중복 수혜 가능

**참고4**

**서류심사 가점 사항**

구분	세부 내용	증빙서류	가점
1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보유 중인 자 (전용 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것 제외)	등록원부	0.5점
2	○ 장애인(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확인)	증빙서류	0.5점
3	○ 만 29세 이하의 대표자	신분증	0.5점
4	○ 최근 2년 이내 정부 주관 전국 규모 창업경진대회 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자	수상 관련 증빙서류	0.5점
5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주관 전통문화창업 공모 수상자 - '2020년 전통문화분야 청년 예비 창업기업 공모' - '2021~23년 전통문화 청년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증빙서류	3.0점
6	○ 최근 2년 이내('20~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교육 이수자 (총 30시간 이상의 기술창업 교육을 수료한 자(온라인 교육은 제외))	수료증	0.5점
7	○ 사회적 기업	인증서	1.0점
8	○ 근로자 미래성과공유제 도입기업(스톡옵션, 이익공유협약)	증빙서류	1.0점
9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 채움공제 가입기업	가입증서	1.0점
10	○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중기부 등록)로부터 투자유치 실적 보유기업(투자유치액 30백만원 이상)	증빙서류	1.0점

※ 항목별 가점은 상이하며, 최대 3점까지 부여